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53146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현, 양승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주식회사 M

13. N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14. O

15. P

16. Q

17. R

18. 주식회사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피고 1 내지 11, 14, 15, 17, 21 내지 2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종인, 윤준용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청 구 취 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O, P, Q, R, U, V, W, X, Y, Z은 각 원고에게 12,58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M, N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8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S, T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8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맞춤형 주문제작 온라인 꽃배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이하 위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고의 제품을 통칭하여 '원고 제품'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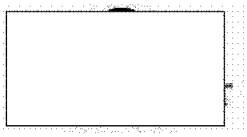
나. 피고 D, I, Y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1] AA, AB, AC, AD, AE, AF, AG, AH 등에 피고들을 판매자로 표시하되 'A'가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원고 제품의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원고 제품을 설명하는 상세페이지를 함께 게시하였다. 피고들은 위 판매글을 통한 일반 소비자들의 주문이 있는 경우 원고 제품을 구입하고 이를 주문자에게 배송되게 하는 방식으로 원고 제품을 판매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AI(이하 'AI'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

1) 피고 D, I, Y은 각 자신의 딸, 어머니, 남편이 판매행위를 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였는데, 원고는 2022. 8. 1. AI로부터 AI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2022. 8. 4.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또한 원고는 AI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위임받은 다음 피고들에게 2024. 8.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AI가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모두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1) 표장: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AJ/ AK/ AL

라. 피고 O는 '원고 제품을 설명하는 상세페이지 중 상품의 사진을 촬영한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전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 5. 29. 위 사진들이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피고 O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2023고정1266).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2024노936,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S, T: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 27, 28, 34 내지 37호증, 을가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

1)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AM', 'A'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꽃 배달업을 영위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원고 제품을 설명하는 상세페이지 중 상품의 사진을 촬영한 부분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원고가 피고들 별로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저작물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진들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공중송신하여 원고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2] 따라서 피고들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원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상품인 것처럼 웃돈을 얹어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상품 또는 영업 출처의 혼동초래행위(이하 각 '가목 부정경쟁행위', '나목 부정경쟁행위'라 한다)에 해당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이하

2) 원고는 원고 제품을 설명하는 상세페이지 중 상품정보를 설명한 부분이 어문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 B, J, L, N, O, P, V, X, Z이 위 어문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공중송신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도 하였다가, 제3회 변론기일에서 '모든 주장을 종합해서 정리하고 포함되지 않는 기존 주장은 철회하는 것으로 한다'는 재판장의 석명에 따라 2024. 6.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그간의 모든 주장을 정리하면서 위 주장은 제외하고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주장만을 유지하였으므로, 원고가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파목 부정경쟁행위'라 한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O, P, R, V, W, X, Y, Z의 주장

가) 피고 D, I, Y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원고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들이 사용한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피고들은 자신의 상호를 별도로 표시하여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사진들은 제품에 대한 정보전달과 광고의 목적에서 촬영된 것으로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작성이 발현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원고 제품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이 아니고, 피고들은 자신의 상호를 별도로 표시하여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었으며, 제품의 재판매는 사적자치에 의해 허용되어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가목, 나목, 파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들은 원고 제품임을 표시하여 재판매하였을 뿐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의·과실도 없다. 나아가 원고의 매출 감소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거나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M(이하 '피고 AN'라 한다), N의 주장

가) 피고 M가 사용한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피고 M는 자신의 상호를 별도로 표시하여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도 없으므로, 피고 M의 행위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진들은 제품에 대한 정보전달과 광고의 목적에서 촬영된 것으로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작성이 발현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 Q, U의 주장

피고 Q, U은 상품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제품이 관련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노출된 것으로서 위 피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위 피고들은 저작권이 문제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페이지를 즉시 삭제하였고 제품을 판매한 적이 없어 그로 인해 얻은 이익 또한 전무하다.

3. 피고 D, I, Y의 행위 주체에 관한 판단

가. 먼저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 I가 각 자신이 대표로 있는 'AO', 'AP'를 판매자로 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원고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3호증은 'AQ'이 원고 제품을 판매한 사실에 관한 증거일 뿐이고 피고 Y이 'AQ'의 대표자라거나 피고 Y이 원고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피고 Y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이하에서는 피고 Y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살펴본다].

4.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나머지 피고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원고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나머지 피고들은 온라인 쇼핑몰에 피고들을 판매자로 표시하여 원고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주문이 있는 경우 원고 제품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원고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함으로써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고, 원고 제품을 구입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를 다시 양도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원고의 꽃배달 영업은 단순한 상품의 판매가 아니라 원고의 고유한 배송·고객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서비스 상품인데 피고들은 단순히 원고 제품만을 구입한 다음 이를 각자의 배송·고객관리 시스템과 결합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상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가공이나 수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상품이 원고 제품과 배송·고객관리 시스템이 결합된 서비스 상품이라고 보더라도,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 제품만을 구입한 다음 이를 각자의 배송·고객관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시스템과 결합하여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3] 나머지 피고들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가공이나 수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들이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진들은 비록 원고의 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피사체인 원고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3) 대부분의 피고들은 구매자의 주문이 들어오면 피고들이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구매자의 주소 등을 입력하여 원고로부터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② 원고가 원고 제품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잘 부각될 수 있도록 모델이 제품을 들고 있게 하거나 제품들을 바닥에 배치하는 등 구도를 설정하였기는 하나 그것이 저작권법이 보호할 만한 원고의 창작적 노력에 해당한다거나 그 과정에 원고의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누가 찍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③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 역시 위와 유사한 이유로 피고 O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6.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가목, 나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5, 26, 29, 30, 31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거나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AR쇼핑의 검색창에 '꽃다발'을 입력하거나 AR의 검색창에 '대형꽃다발'을 입력하였을 때 원고의 판매글이 노출되기는 하나 이는 우선노출을 위한 광고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AR 데이터랩 검색어트랜드 조회결과 역시 조회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사용되고 있는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의 실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나 사용량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이상, 원고의 2019. 1. 1.부터 2022. 6. 30.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매년 10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만으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②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머지 피고들은 판매자를 자신으로 표시하면서도 제목에 원고의 상호인 'A'를 표시하는 등 원고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하였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파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상호를 표시하여 원고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원고 제품을 재판매한 행위로서 원고의 상표권,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가목,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나머지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파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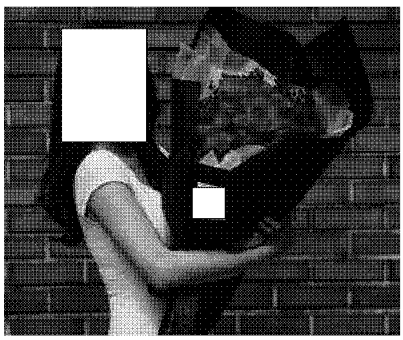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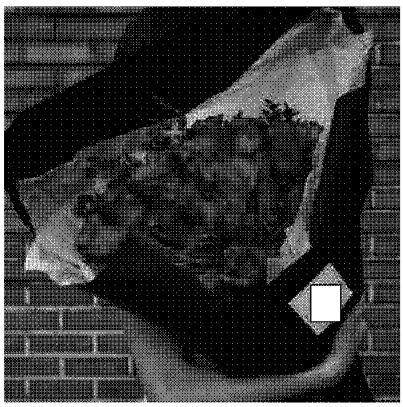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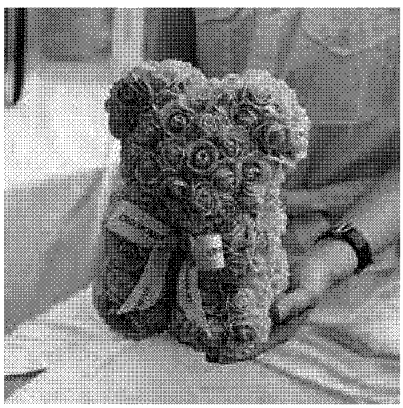
판사 김수현

판사 차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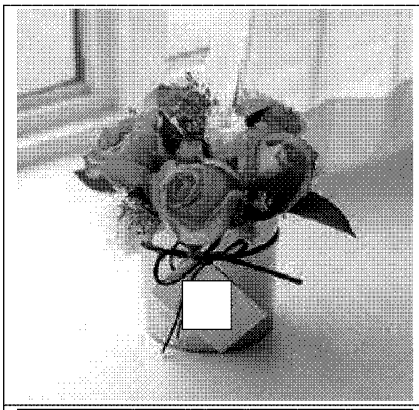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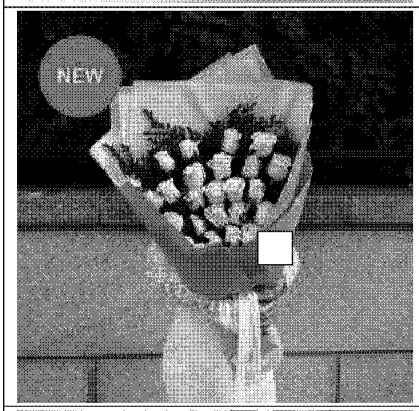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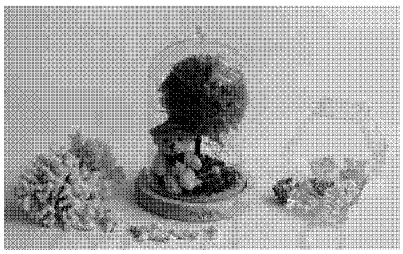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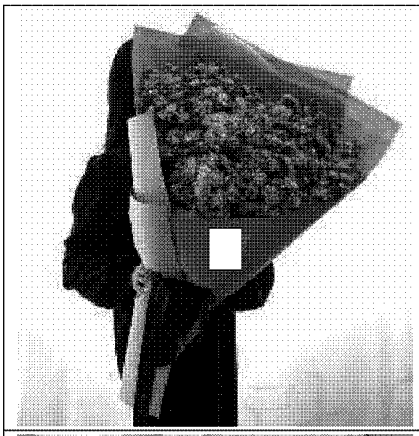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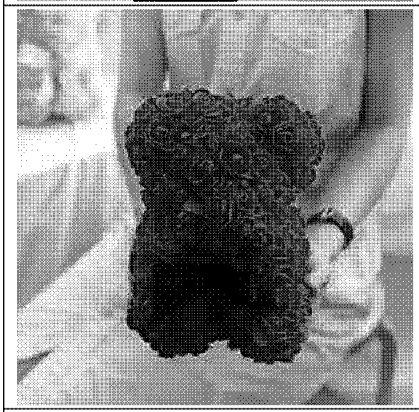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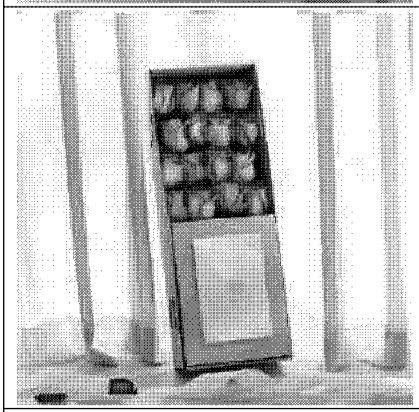
목록

저작물	침해의 주체	서증
	피고 B	갑 제2호증
	피고 B	갑 제2호증
	피고 C	갑 제3호증
	피고 F	갑 제6호증
	피고 I	갑 제9호증
	피고 J	갑 제10호증
	피고 K	갑 제11호증
	피고 N	갑 제13호증
	피고 O	갑 제14호증
	피고 R	갑 제17호증
	피고 X	갑 제22호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피고 D	갑 제4호증
	피고 E	갑 제5호증
	피고 G	갑 제7호증
	피고 H	갑 제8호증
	피고 N	갑 제13호증
	피고 Q	갑 제16호증
	피고 W	갑 제21호증
	피고 Z	갑 제24호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피고 L	갑 제12호증
	피고 N	갑 제13호증
	피고 P	갑 제15호증
	피고 V	갑 제20호증
	피고 X	갑 제22호증
	피고 R	갑 제17호증
	피고 V	갑 제20호증
	피고 Y	갑 제23호증
	피고 T	갑 제18호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5

	피고 T	갑 제18호증
	피고 U	갑 제19호증

끝.